##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Hi 첫 체 이	근거 법조문	차량 종류별
범 칙 행 위	(도로교통법)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km/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제53조제1항ㆍ제2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	항, 제53조의5	
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		
다)		
1의3.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제54조제1항제2호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1의4.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제43조	자전거등: 10만원
운전		
1의5.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	제50조제8항	
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		
거등을 운전		
2. 속도위반(40km/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60km/h 이하)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제49조제1항제9호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운전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제51조	
위반		
3의3.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제32조제6호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정차·주차 금지 위반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3의4.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	제50조제10항	
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		
치를 운전		
4. 신호·지시 위반	제5조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제13조제1항부터 제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l		

5의2.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3항까지 및 제5항 제15조의2제3항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의무 위반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3만원
7. 횡단·유턴·후진 위반	제18조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	제21조제1항·제3 항, 제60조제2항 제22조	
반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 반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	, , , , , ,	
지 위반을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 반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ㆍ제3항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 보·일시정지 위반	제29조제4항ㆍ제5항	
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제29조제6항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제39조제1항·제3항 ·제6항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제49조제1항제2호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제49조제1항제10호 제49조제1항제11호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 작	제49조제1항제11호 의2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제 5 0 조 제 5 항 제 1 호·제2호	

17. 삭제 <2014.12.31.>		
18. 삭제 <2014.12.31.>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60조제1항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 다인	제61조제2항	
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21. 통행 금지ㆍ제한 위반	제6조제1항·제2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항ㆍ제4항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15조제3항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22의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	제16조제2항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반		2만원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	제19조제1항	
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제21조제4항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5조	
25의2.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	제25조의2제2항・	
법 위반	제3항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제26조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	제27조제3항부터 제	
호 불이행	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제10	제32조	
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		
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		
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30.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ㆍ	제34조의3	
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제35조제1항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제39조제1항 및 제4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	항부터 제6항까지	
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48조제1항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제49조제1항제5호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1	a.a. a -a -	I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제49조제1항제8호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제49조제1항제12호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8의2.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제50조제4항 	
장구 미착용		
38의3.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제50조의2제1항	
준수사항 위반	2.2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횡	제62조	
단·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제64조	
정차 · 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제65조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6조	
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제7조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4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	제14조제2항ㆍ제3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비보다	항ㆍ제5항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넓은 차 통행 금지 위반(진로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1만원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km/h 이하)	제17조제3항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제19조제3항	
48. 급제동 금지 위반	제19조제4항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50. 서행의무 위반	제31조제1항	
51. 일시정지 위반	제31조제2항	
	· -	
52.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		
52.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	제38조제1항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 이행	제38조제1항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 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조치 위반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7호	
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1항제7호	

위반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7의2. 등화점등 불이행・발광장 치 미착용(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 색・표지 금지 위반	제50조제9항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 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때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노면전차의 승차 거부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50조제5항제3호 제50조제6항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거등의 운전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제44조제1항	1)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2) 자전거: 3만원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제44조제2항	1)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2) 자전거: 10만원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모든 차마: 5만원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 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 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 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 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 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 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73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15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10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 비고

-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4. 위 표에서 "손수레등"이란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